

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

| | |
|----------|---------|
| 의안 번호 | 관련 1505 |
|----------|---------|

제안년월일 : 2017년 2월 20일
제안자 : 교 통 위 원 장

1. 수정이유

- 개정조례안 내용 중 선출직 공무원에 대한 특혜성 시비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사항이 있어 이를 정리함으로써 개정조례안의 실효성을 확보토록 함

2. 주요 골자

- 가. “국회의원 및 소속 지방의회의원 차량”을 삭제함(안 제23조의2 제2호)

3. 참고 사항 : 생략

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23조의2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2. 관용차량

수정안 조문 대비표

| 현 행 | 개 정 안(의원발의안) | 수 정 안(전문위원실안) |
|-------|---|---|
| <신 설> | <p>제23조의2(공공기관 부설주차장 주차요금의 감면) 시·자치구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에 부설된 주차장의 관리자는 제23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제7조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의 감면 차량 관용차량, 국회의원 및 소속 지방의회의원 차량 외국사절 등 외빈차량 및 언론기관의 보도차량 시·자치구 및 그 소속기관이 주최하는 행사에 참가하는 차량 중 공공시설 부설주차장의 관리자가 정하는 차량 그 밖에 공공기관 부설주차장의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차량 | <p>제23조의2(공공기관 부설주차장 주차요금의 감면) (<u>개정안과 같음</u>)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(<u>개정안과 같음</u>) 관용차량 ~5. (<u>개정안과 같음</u>) |

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제2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3조의2(공공기관 부설주차장 주차요금의 감면) 시·자치구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에 부설된 주차장의 관리자는 제23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.

1. 제7조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의 감면 차량
2. 관용차량
3. 외국사절 등 외빈차량 및 언론기관의 보도차량
4. 시·자치구 및 그 소속기관이 주최하는 행사에 참가하는 차량 중 공공시설 부설주차장의 관리자가 정하는 차량
5. 그 밖에 공공기관 부설주차장의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차량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 조문 대비표

| 현 행 | 개 정 안 |
|-------|--|
| <신 설> | <p><u>제23조의2(공공기관 부설주차장 주차요금의 감면) 시·자치구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에 부설된 주차장의 관리자는 제23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.</u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u>1. 제7조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의 감면 차량</u> <u>2. 관용차량</u> <u>3. 외국사절 등 외빈차량 및 언론기관의 보도차량</u> <u>4. 시·자치구 및 그 소속기관이 주최하는 행사에 참가하는 차량 중 공공시설 부설주차장의 관리자가 정하는 차량</u> <u>5. 그 밖에 공공기관 부설주차장의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차량</u> |